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4. 8. 13.>

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(제24조제1항 관련)

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(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며,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(이하 "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"이라 한다)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. 다만,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× 0.1 × (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 ÷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)